|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환급세액에서 체납세액 상계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54호최근 지역의 보고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79조 환급세액에서 체납세액을 상계(이하 ‘환급으로 체납 대체(以退抵欠)’)하는 규정이 강제집행조치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다. 강제집행조치 및 환급으로 체납을 대체하는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기 위하여,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환급세액으로 체납세액을 상계하는 유관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세수징수관리법 제40조 규정에서 세수강제집행조치란, 세무기관이 지정한 기한을 초과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이 그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서면통지를 취하여 그 예금액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가리키며, 압류, 봉인, 법에 따라 그 가치가 납부할세액에 상당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경매하거나 또는 환금하고, 경매 또는 환금매각소득으로 세액을 공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환급세액에서 체납세액 대체는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계산하여 확정한 세무결산제도이며, 예금액에서 세액을 공제하거나 압류, 봉인, 경매, 변매 강제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세액에서 체납세액 대체 확정 후 잔액이 있는 경우 납세인에게 환급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납세인이 계속 납부하도록 시정 명령해야 한다. 환급으로 체납 대체 후 납세인에게 여전히 체납세액이 존재하며, 납부명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행정강제집행을 위하여 강제집행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급으로 체납 대체는 행정강제집행에 속하지 아니 한다.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2013년 9월 16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应退税款抵扣欠缴税款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54号近期地方反映，对于《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第79条关于应退税款抵扣欠缴税款（以下简称以退抵欠）的规定是否属于强制执行措施有不同理解。为了全面准确贯彻强制执行措施和以退抵欠的规定，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简称税收征管法）及其实施细则的有关规定，现将应退税款抵扣欠缴税款有关问题公告如下：税收征管法第40条规定，税收强制执行措施是指对经税务机关责令限期缴纳税款逾期仍不缴纳的情形，税务机关采取书面通知其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从其存款中扣缴税款；扣押、查封、依法拍卖或者变卖其价值相当于应纳税款的商品、货物或者其他财产，以拍卖或者变卖所得抵缴税款的行为。以退抵欠是税务机关计算确定纳税人应纳税义务的一项税款结算制度，不涉及从存款中扣缴税款和扣押、查封、拍卖、变卖强制行为。以退抵欠确定后有余额的退还纳税人；不足部分，责令纳税人继续缴纳。以退抵欠之后纳税人仍有欠税，经责令缴纳仍不缴纳的，税务机关采取强制执行措施，为行政强制执行。以退抵欠不属于行政强制执行。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3年9月16日 |